

화순군도로관련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4. 10
- 다. 상 정 일 자 : '97. 4. 17 (제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송기채
- 나. 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이 1996년 7월 1일 대통령령 15100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이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8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 심의회로 개정되는등 관련 조문의 상이한 부분을 개정키 위함.

다. 주요내용

- 동 조례 제2조 제1항의 도로 관련 사업조정위원회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8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 심의회로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9 규정에 의거 동 조례 제2조 제2항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개정하며,
- 동 조례 제5조 제3항에 주요 지하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굴착 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 시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절차상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조례 제명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도로관련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47
----------	---------

제출일자 : 1997. 4. 10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이 '96. 7. 1자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내용중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관련법 조문과 서로 상이한 내용을 상호 일치 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심의회의 구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나. 기능

1.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등

다.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를 "화순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리심의회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 회무를 통리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리심의회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0조중 "위원회"를 "관리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명: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p> <p>제2조 (구성) ①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p> <p>③ (생략)</p> <p>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술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p>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p>	<p>제명: 화순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p> <p>제2조 (구성) ①도로관리심의회 (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 - - - - - - - - - - - - - - -.</p> <p>②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 (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 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p>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① - ② (생략)</p> <p>제5조(회의) ① <u>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u></p> <p>② <u>정기회의는 매분기초(1, 4, 7, 10)에 소집한다.</u></p> <p>③ <u>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u></p> <p>④ <u>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u></p> <p>제8조(간사의 서기) ①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u></p> <p>② (생략)</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u>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u></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회의) ① <u>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u></p> <p>② <u>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③ <u>관리심의회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u></p> <p>제8조(간사와 서기) ① <u>관리심의회 - - - - -</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시행규칙) - - - - -</p> <p>- - <u>관리심의회</u> - - - - -</p> <p>- <u>관리심의회</u> - - - - -</p> <p>- - - - -.</p>